

의안번호	2203874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8.
추계번호	24C3743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3(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)	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통합관리원(이하 “통합관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 통합관리원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 -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- 세계유산의 홍보 계획 수립·시행 -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- 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- 그 밖에 통합관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3(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과 같이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고,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통합관리원에 대한 설립 주체가 불분명하고, 설립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.

- 또한 통합관리원 운영과 관련한 임직원 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통합관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
 -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통합관리원이 수행하기로 예정(안 제18조의3제4항)된 사업 대부분은 예산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되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] 통합관리원이 수행 예정 업무 중 국가유산청이 실시 중인 사업 현황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(2024년 기준)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	26,433
세계유산의 홍보 계획 수립·시행	2,979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	217
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	1,000
합계	30,629

자료: 국가유산청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